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44호 2018. 02. 22.(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451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2
- 사천시 조례 제1452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8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8-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18
- 사천시 고시 제2018-3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19
- 사천시 고시 제2018-4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20
- 사천시 고시 제2018-4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 고시-----21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7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5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3항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지법」에 따른 농막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3)

9. 생굴 간이박신장 용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체가 용이한 건축물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박신장 등 이와 유사한 것

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것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 및 법 제14조에 다른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법 제35조의2제1항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영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횟수를 총3회까지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4)

3.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5.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인 경우
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로서 양성화하는 축사
3.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추인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 9호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6)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의 창고건축물은 제외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 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 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미터 이상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7)

2.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5미터 : 이상 ·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4미터 이상(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 기 타 : 2미터 이상

비고

- 1)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 2) 제1호마목과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의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을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5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바다 케이블카(이하 “케이블카” 라 한다)”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차체를 설치한 운송수단으로 제3조의 구간을 운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케이블카시설”이란 케이블카, 케이블카공원(문화공원26) 그리고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집단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9)

4. “이용료”란 케이블카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탑승권”이란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위해 매표소 등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케이블카시설물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케이블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임차인”이란 케이블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휴장일”이란 케이블카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제3조(운행구간) 케이블카의 운행 구간은 별표 1로 한다.

제4조(승차기준) ① 케이블카 캐빈 1대당 승차정원은 1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거나 화물에 대하여는 승차인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다.

1.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0.5명
2. 화물의 경우 그 무게 65킬로그램 마다 1명

제5조(운행시간) ①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09:00 ~ 18:00
2. 동절기(11월~3월): 09:00 ~ 17:00

② 제1항의 케이블카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단,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9)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운행 시 관광객 수의 급변, 기상현황, 그 밖의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정기휴장) 케이블카 운행의 정기휴장일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휴장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장일로 한다.

제7조(임시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케이블카 운행의 임시휴장일로 지정한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케이블카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케이블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장 케이블카의 이용

제8조(발권방법) 케이블카 탑승권의 발권은 왕복권과 편도권으로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서 발권한다.

제9조(승차방법) ① 케이블카 왕복 탑승권을 가진 승객의 승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1. 최초 탑승지인 대방정류장에서의 승차는 탑승권에 표기된 탑승번호순으로 한다.
2. 경유지인 각산정류장에서의 승차는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10)

② 케이블카 편도 탑승권을 가진 승객은 각산정류장에서만 이용가능하며, 승차는 발권 후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로 한다.

제10조(이용료) ① 케이블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서 탑승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탑승권은 당일 운행시간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④ 탑승권은 대인 및 소인, 개인 및 단체, 왕복권 및 편도권으로 한다.

⑤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뜻하며 소인은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만 3세(3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11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 또는 케이블카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단, 보호자 1명당 아동 1명 이용료 면제가능,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소인요금 적용)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라 감면 이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천시민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1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1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수탁자는 연계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단체이용요금 할인 등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1. 케이블카시설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12)

2. 케이블카 시설물의 안전 문제 발생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케이블카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운영을 중단한 경우

제14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운행구간의 정거장마다 케이블카시설 안전기준과 케이블카시설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케이블카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흡연,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케이블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이나 감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12세 미만의 어린이
5. 장애인 안내견 외에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6. 케이블카시설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7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케이블카 및 시설물 등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13)

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관리자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게시사항) 시장은 케이블카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행시간
5. 승차 정원
6.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손해배상 의무
7. 이용약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시설의 위탁과 임대

제19조(위탁 또는 임대 운영) ① 케이블카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케이블카시설의 운영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케이블카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14)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문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 또는 임대기간 등) 케이블카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1조(전대) 수탁자는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단, 전대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무) 수탁자 및 임차인은 위탁 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 및 임차인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 및 임차인이 부담하고 위탁 및 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4. 수탁자 및 임차인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 지시사항을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15)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 또는 임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 및 임차인이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 및 임차인이 위탁 또는 임대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 및 임차인에게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또는 임대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한 경우

제2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케이블카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5조(수입금의 관리) 케이블카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개시일에 납입한다.

제26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케이블카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임대인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가입한 보험 외에 필요하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① 케이블카 이용료를 제외한 시설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16)

계약에 관한 법률」,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17)

[별표 1]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행구간(제3조 관련)

운행구분	기점	경유		종점
		1	2	
왕복	사천시 사천대로 18(대방동) 대방정류장	사천시 초양길 10(늑도동) 초양정류장	사천시 실안길 144-174 (실안동) 각산정류장	사천시 사천대로 18(대방동) 대방정류장
편도	사천시 실안길 144-174(실안동) 각산정류장	-		사천시 사천대로 18(대방동) 대방정류장

[별표 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제10조 관련)

구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5,000	14,000	9,000	8,000	1명 요금
	소인	12,000	11,000	6,000	5,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0,000	19,000	12,000	11,000	1명 요금
	소인	17,000	16,000	9,000	8,000	1명 요금

-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초등학생과 만 3세(3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자 1명당 아동 1명 이용료 면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소인요금 적용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17)

[별표 3]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감면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사천시민	대인	10,000원	-	1명 요금
	소인	7,000원	-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2,000원	-	1명 요금

- ※ 1. 이용료 감면은 일반캐빈 왕복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 제3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18)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8 - 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 02. 22.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8 - 1호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18년 02월 14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선전지구 연안정비사업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894-5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1,500m²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8. 02. 14. ~ 2048. 02. 13.(30년)
7.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19)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8 -3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 02. 22.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18 - 1호
2. 점용·사용 (변경)허가 연월일 : 2018년 1월 25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사토반입을 위한 물량장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2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당 초 : 2,684(직접500, 간접:2,184)
 - 변 경 : 2,946㎡(직접:762, 간접:2,184)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7. 12. 20. ~ 2019. 04. 30.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프라임산업개발(주) 대표 김종진
 - 주 소 :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699-1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20)

고 시

사천시 고시 제 2018 -4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 02. 22.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8-1호(2018. 02. 14.)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선전지구 연안정비사업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897-5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18-2호
 - 공사기간 : 2018. 03. 01. ~ 2018. 12. 3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18. 02. 19.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44호(21)

고 시

사천시 고시 제 2018 -4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 02. 22.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7-10호(2017. 12. 12.)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경남지부 강상헌
 - 주 소 : 경남 사천시 해안관광로 339(송포동)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 시험장 운영에 필요한 위치표시용 부표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1526-12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 승인번호 : 제2018-3호
 - 공사기간 : 2018. 02. 21. ~ 2018. 02. 2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 2018. 02. 19.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
 - 점용·사용 허가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